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46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법률안 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심사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58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5. 1. 31.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4. 28.)
				소위 심사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4.)
	2208904	고동진의원 등 10인	2025. 3. 13.	소위원회 직접회부(2025. 8. 26.)	
				소위 심사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2.)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 5. 14.)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5.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
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5. 14.)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
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주목받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 재난 예방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다양한 신산업 분야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 정도 등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이행 점검 등 관리·감독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1항).
- 나. 종전에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4항).
- 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2제3항 및 제6항).
- 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28조의13 및 안 제28조의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제7조의9제1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3.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6의4. 제2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5절(안 제28조의12부터 제28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2항에 따른 보

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환경에서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환경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3.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
 -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전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요인평가”라고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종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2. 제3항에 따른 위험요인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

⑦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 기준 및

절차, 위험요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에 관해서는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보호위

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28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

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인공지능기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6. (생략) 6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6의4. 제2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9의2.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9의2. (현행과 같음)

10. ~ 16. (생략)
<신설>

<신설>

10. ~ 16. (현행과 같음)
제5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① 개

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고 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

용할 수 있다.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

성, 인공지능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

려울 것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환경에서 처리하거

나 클라우드 환경 등 개별 상

황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3.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
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
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
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
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고

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전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요인평가”라고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종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신 설>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을 제
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
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2. 제3항에 따른 위험요인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

⑦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
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 기준 및 절차, 위험요인평
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
리·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제
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
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
리·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에 관해서는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28조의12제2항 후단에 따
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
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
여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 개
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
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
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

<신 설>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

--인공지능기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